

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(2026. 3. 4. 기준)

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제16조(관리감독자) / 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 / 제22조(산업보건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임 또는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: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수행 - 관리감독자: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 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: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도·조언 ※ 전담인력의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 	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29조 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시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기 안전보건교육: 비사무직(12시간/반기), 사무직(6시간/반기) - 관리감독자 교육: 정기(연간 16시간) / 채용 시(8시간) / 작업내용 변경(2시간) / 특별교육(16시간) - 채용 시 교육: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1시간, 4시간, 8시간 이상 - 특별교육: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2시간, 8시간, 16시간 이상 	500만원 이하 과태료 (특별안전보건교육은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제34조 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6조 (위험성평가의 실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※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근로자 참여 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7조 (안전보건표지의 설치·부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·시설·물질에 대한 경고, 지시·안내표지 등을 설치 또는 부착 ○ 시행규칙 별표 6~9 참조 - 금지표지 / 경고표지 / 안내표지 / 지시표지 ○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현장은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8조(안전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그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방지 -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대한 위험 방지 / 전기,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방지 - 추락·붕괴·낙하·비래에 대한 위험 방지 / 굴착·하역·벌목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위험방지 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제39조(보건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- 온·습도, 근골격계부담작업,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- 방독·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, 휴게시설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제40조(근로자의 준수사항) 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함 ○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	3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
제51조 (사업주의 작업중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보건 조치 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제52조 (근로자의 작업중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○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, 관리감독자는 조치 후 작업 재개 	-
제57조 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됨 ○ 산업재해 발생 보고(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및 3년 보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망 시: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유/무선 보고 -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: 관할지청에 1달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	은폐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62조 (안전보건총괄책임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시근로자(관계수급인 포함)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63조 (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실시(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) 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제64조 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/ ○ 작업장 순회점검 ○ 도급사업시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/ ○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○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/ ○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및 위생시설 설치 및 이 용의 협조 ○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·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·내용등의 조정 	500만원 이하 벌금
제65조 (도급인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제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급인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, 안전조치 여부 확인 - 화학물질을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- 반응기·증류탑·배관·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-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	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제93조(안전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2톤 이상)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원심기(산업용), 롤러기(밀폐형 구조 제외)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 -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, 그 이후 2년마다 실시 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14조 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 제115조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등의 경고표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학물질 등 취급 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실시 ○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 실시 	5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19조(석면조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물 해체 시 석면 조사 실시 	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, 5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2조 (석면의 해체·제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석면해제·제거 업자가 해체·제거 하여야함 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제125조 (작업환경측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음(80dB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○ 반기 1회 실시 /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시 년 1회 실시(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함) 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8조의2 (휴게시설의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- 상시근로자(관계수급인 포함)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	1,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9조(일반건강검진) 제130조(특수건강검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건강검진- 사무직 2년 1회, 비사무직 1년 1회 ○ 특수건강검진-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고열 등 노출 근로자(6개월 ~2년 1회) ○ 배치전건강검진- 신규채용,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64조 (서류의 보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등의 서류는 일정기간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(3~30년간 보존) 	300만원 이하 과태료